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9. 11.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8월 29일
-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 2013년 9월 5일
- 라. 상정일자 : 제17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13년 9월 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국장 박문희)

가. 제안이유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시행되었으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뉴타운사업이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전환되었고 조례의 제정 목적 또한 달성되면서 기존 조례운영이 형식화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태선)

본 폐지조례안은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5일 제정되어 이를 근거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06년 7월 1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전부 전환되었고, 또한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기에 관련조례를 운영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 230 호
----------	---------

제출연월일 : 2013. 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균형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2005.1.5)에 따라 추진된 뉴타운사업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6.7.1시행)에 의해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변경되어, 동 조례의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고, 2010년 이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활동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코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7.18 ~ 8.7, 20일간)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대상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평가실시(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